

「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
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□ 안광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96호

「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

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

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은

○ 「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

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의

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

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로

변경하고,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0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2조의 ‘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’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이의가 없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0. 11. 23.

재무국장 이병한